

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

※ 음영 표시된 부분은 필수 기재사항이며, 영문증명 신청 시 “영문”란 기재

※ 신청 시 제출서류 : 뒷면 참조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한글: 영문:	상 호 (법 인 명)	한글: 영문:
	주민등록번호		사업자등록번호	
	휴대전화번호		전 화 번 호	
	주소(사업장)	한글: 영문:		

증명종류	증명종류 선택 (※ 해당되는 □에 √ 하고, 매수 기재)		증명기간	매수	
	□ 한글	□ 소득금액 증명	(소득발생처공개 : □ 여 □ 부) (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모두표기 : □ 여 □ 부)	~	
		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		~	
		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		~	
		□ 표준재무제표증명		~	
	□ 영문	□ 납부내역증명		~	
		□ 납세증명서 (대금수령용 · 해외이주용 · 기타용)			
		□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원사업장 증명			
		□ 사업자등록증명: 매 □ 휴업사실증명: 매 □ 폐업사실증명: 매			
	□ 한글	□ 근로(자녀)장려금수급사실증명		~	
□ 연금보험료등소득 · 세액공제확인서					
□ 모범납세자증명					
□ 소득확인 증명서		청년우대형주택청약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	(소득공개 : □ 여 □ 부)		
		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	(소득공개 : □ 여 □ 부)		
		청년희망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	(소득공개 : □ 여 □ 부)		
	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	(소득공개 : □ 여 □ 부)			
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		(소득공개 : □ 여 □ 부)			

기타 □ 사업자등록증 재발급(교부사유:) □ 기타()

공동사업자 성명 / 원천징수의무자 상호 (영문:)

용도 □입찰·계약 □수금용 □관공서 □대출 □여권·비자신청 □건강보험·국민연금공단 □금융기관 □신용카드 발급 □기타

공개여부 (주민등록번호) □ 공개 □ 일부공개, (주소) □ 공개 □ 일부공개 제출처
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위 신청인 :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증명발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 (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)

(수집항목) 성명, 상호, 주소(사업장), 전화번호 (수집목적) 증명발급, 사후관리 등 (보유기간) 5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□ 동의 □ 미동의

■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내역 (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)

(수집항목)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 (수집목적) 증명발급, 사후관리 등 (보유기간) 5년

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□ 동의 □ 미동의

신청인 본인(서명 또는 인) :

위임받은 사람(서명 또는 인) :

■ 신청인이 만 14세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)

□ 동의 □ 미동의

본인(서명 또는 인) :

법정대리인(서명 또는 인) :

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: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☞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증명발급을 신청할 경우,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(뒷면)

위임장

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위임받은 사 람	성 명	주민등록번호	신청인과의 관계	전화번호(휴대폰)

※ 다른 사람의 도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안내(무료)

○ 다음 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- (무인민원발급기)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으로 접속하여 발급(개인, 법인 대표)
- (홈택스) 인터넷(hometax.go.kr)에서 회원으로 접속하여 발급 (사업자등록증명, 휴업·폐업 사실증명, 납세증명서, 모범납세자증명 등 5종은 공동·금융인증서로 접속)
- (정부24) 인터넷(gov.kr)에서 공동·금융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
- (모바일민원실) 「손택스(국세청 홈택스)」 모바일 앱에서 공동·금융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
- (어디서나민원처리제)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(3시간 이내)
- (민원우편)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(민원우편료는 별도 부담)

신청 시 제출서류

1. 본인 신청 시

가. 다음 서류로 본인을 확인합니다.

- ① 개인사업자 : 본인 신분증
- ② 공동사업자 :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
-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(국세기본법 제13조) :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
- ④ 법인 :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
- ⑤ 비사업자 : 본인 신분증

나.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여권,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.

다.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,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. 대리인 신청 시

가.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합니다.

- ① 위임장
-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(사본) 또는 법인인감증명서(사용인감 가능)(사본),
 - 위임자가 법인인 아닌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(사본)(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(사본 포함) 또는 (전자)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(사본 포함)
-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

※ 국세청 전산에서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 설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,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만 확인합니다.